

의안번호	2202186
의 퇴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4. 7. 24.
추 계 번 호	24G2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②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조정, ③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④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연장 등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5년 1조 3,985억원, 2043년 1억원 등 2025년부터 2043년까지 19년간 총 8조 5,251억원(연평균 4,4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단위: 억원)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안 제10조 제1항 후단)		-20,542	-21,158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를 3년 한시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	-2,325	-2,395	-2,467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4조 제1항) ¹⁾	-11,658	-12,074	-12,50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연장(안 104조의24)		-2	-4	-6	-8	-10	-10	-10	-10	-10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의2)	-2	-2	-2	-2	-2						
합계	-13,985	-35,015	-36,138	-8	-10	-10	-10	-10	-10	-10	-9

	'36	'37	'38	'39	'40	'41	'42	'43	누적	연평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안 제10조 제1항 후단)									41,699	-20,850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를 3년 한시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									-7,187	-2,396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4조 제1항) ¹⁾									-36,239	-12,08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연장(안 104조의24)	-8	-7	-6	-5	-4	-3	-2	-1	-115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의2)									-10	-2
합계	-8	-7	-6	-5	-4	-3	-2	-1	-85,251	-4,487

주: 1)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24~'26년) 상향조정 - (현행) 대 25%, 중견 40%, 중소 50% - (개정안) 대 40%, 중견 55%, 중소 65%	
2	안 제24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 투자분까지 3년 연장	
3	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현행) (완전복귀·수도권 밖 부분복귀) 7년 100% + 3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개정안) (완전복귀·수도권 밖 부분복귀) 9년 100% + 5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4	안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 감면율: (완전복귀·수도권 밖 부분복귀) 100% (수도권 내 부분복귀) 50%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 제1항(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안 제24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	
3	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	안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제1항: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2년 R&D 세액공제 실적을 활용하되, 국가전략기술 R&D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 상 2023년 잠정 실적을 활용
 -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²⁾에서 전망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공제액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며,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에 대해서는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2027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안 제10조제1항: 공제율 한시 상향)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R&D 증가분 공제액(2022년)을 기업규모별로 안분하여 추정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R&D 증가분 공제액을 기업규모별로 추정
 -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²⁾에서 전망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의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므로,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2027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1) 기획재정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2023. 12.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 (안 제24조제1항)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³⁾ 및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를 참조하여 2023년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잠정치)를 기업규모·기술별로 추정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2023)」상 투자계획 증감률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공제율 상향조정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 「설비투자계획조사」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만 존재하며,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놓어흔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2027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안 제104조의2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다음과 같이 가정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액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감면액 전망치⁴⁾가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간 국내 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고, 국내 복귀한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14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 현행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적용되나, 개정안에 따라 9년간 100%, 이후 5년간 50%가 적용
-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

3) 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 9.

4)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안 제118조의2)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다음과 같이 가정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간 (2019~2023년(전망))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연장, 일반 R&D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에 따라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 +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 3년 한시 상향조정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기술별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
 -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가분(전년 대비 초과분)과 당기분 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함
 - 증가분 = (당해 일반R&D 비용 - 직전 4년 일반 R&D 연평균 비용) × 공제율
 - 당기분 = 당해 일반R&D 비용 ×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일반 R&D(당기분)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 R&D: 대기업 2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R&D: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3 (한도 10%)’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

[표 2]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증가분	25	40	50
	당기분	최대 2 ²⁾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30 ¹⁾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30~40	40~50

주: 1)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 25~40% 적용함

2)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로 계산함

□ (공제실적) 2022년 R&D 세액공제 실적은 총 3조 6,173억원 수준

[표 3] 기술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2년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R&D	14,512	2,535	5,811	22,858
신성장·원천기술 R&D	292	324	8,176	8,791
국가전략기술 R&D	18	0.2	4,506	4,524
계	14,821	2,859	18,494	36,17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현행 2024년 말로 예정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특례를 2026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과 '24~'26년 한시적으로 일반 R&D의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5%p 상향조정하는 내용

[표 4] 일반 R&D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정안

(단위: %)

		현행			개정안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R&D (택1)	당기분	최대 2 ¹⁾	8	25	최대 2 ¹⁾	8	25
	증가분	25	40	50	40	55	65

주: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 (2% 한도)

(2) 추계방법

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2년 및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24년) 2.5%, ('25년) 3.0%

※ 2026년은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2025	2026	2027
중소기업	319	329	339
중견기업	354	365	376
대기업	8,949	9,217	9,494
계	9,622	9,911	10,208
<국가전략기술>	2025	2026	2027
중소기업	33	34	35
중견기업	9	10	10
대기업	12,433	12,806	13,190
계	12,476	12,850	13,2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는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표 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단위: 억원)

		2026	2027
신성장·원천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1,342	1,382
	신성장·원천 공제율 기준 (B)	9,911	10,208
	차이 (B-A)	8,569	8,826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878	904
	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B)	12,850	13,236
	차이 (B-A)	11,972	12,3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 2024~2026년 한시 상향조정

-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액 추정) 국세청이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2022년 신고분)를 바탕으로 기업규모별로 증가분 공제액을 추정

- 명세서상 전체 일반 R&D 공제세액 대비 증가분 비중
 - 대기업 31.8%,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16.1%

[표 7] 기업규모별·유형별 일반 R&D 세액공제액 추정: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R&D 세액공제	전체	14,512	2,535	5,811	22,858
	- 당기분	12,178	1,690	3,966	17,833
	- 증가분	2,334	845	1,846	5,02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반 R&D 세액공제액(증가분)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25년 공제액을 전망하고, 개정안의 일반 R&D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 ('24년) 2.5%, ('25년) 3.0%
※ 2026년은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일반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안에 따른 공제율 변화
 - 증가분 공제율(%): 대기업 25 → 40, 중견기업 40 → 55, 중소기업 50 → 65

[표 8]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2,555	2,631	2,710
	중견기업	924	952	981
	대기업	2,020	2,081	2,143
	소계	5,499	5,664	5,834
한시 상향 공제율 적용 (B)	중소기업	3,321	3,421	3,523
	중견기업	1,271	1,309	1,348
	대기업	3,233	3,330	3,430
	소계	7,825	8,059	8,301
차이 (B-A)	중소기업	766	789	813
	중견기업	347	357	368
	대기업	1,212	1,249	1,286
	소계	2,325	2,395	2,4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현행 2024년 말에
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하고,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15%p 상향조정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2,325억원,
2026년 2조 3,625억원 등 3년간 총 4조 8,887억원(연평균 1조 6,296
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 및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항)	-2,325	-22,937	-23,625	-48,887	-16,296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년 연장	－	-20,542	-21,158	-41,699	-20,850
－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조정	-2,325	-2,395	-2,467	-7,187	-2,396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1) 제도 개요

□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

○ 당기분 공제율(%): (일반) 대 1→3, 중견 5→7, 중소 10→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6, 중견 6→10, 중소 12→18

○ 증가분 공제율(%): 3→10

□ 개정안은 현행 2023년 투자분에만 적용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연장하는 내용

[표 10]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단위: %)

	기본				임시 투자 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5	15	25	10

(2) 추계방법

□ (2023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액)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

-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치에서 국가전략기술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별·기술별로 안분
 - 기업규모별 세액비중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규모별로 안분
 - 명세서상 일반 및 신성장·원천 R&D 당기발생세액 비중(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기술별 안분
- (국가전략기술) 기획재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상 수치를 인용하여 활용

[표 11] 기술유형별 시설투자 관련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투자	3,172	783	2,789	6,744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16	177	6,146	6,538
국가전략기술 투자	8	9	7,483	7,50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청 제출자료, 기재부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비투자계획조사」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상향조정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2023~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잠정): 대 -5.3%, 중견기업 9.8%, 중소기업 5.8%
 -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망): 대 3.0%,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6.5%
 - ※ 2025년 이후 설비투자 증감률은 2024년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변화
 - 당기분 세액공제율(%): (일반) 대 1→3, 중견 5→7, 중소 10→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6, 중견 6→10, 중소 12→18
 - 증가분 세액공제율(%):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3→10
(국가전략기술) 4→10

-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을 반영하여 추정

[표 12]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3,817	4,066	4,330
	중견기업	1,099	1,146	1,195
	대기업	8,715	8,976	9,246
	소계	13,631	14,188	14,77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B)	중소기업	5,880	6,262	6,669
	중견기업	1,973	2,058	2,147
	대기업	20,350	20,960	21,589
	소계	28,203	29,281	30,405
차이 (C=B-A)	중소기업	2,063	2,197	2,340
	중견기업	874	912	951
	대기업	11,635	11,984	12,343
	소계	14,572	15,093	15,634
세수효과 [C × [1-0.2] ¹⁾]		-11,658	-12,074	-12,507

주: 1)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658억원, 2027년 1조 2,507억원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3조 6,239억원(연평균 1조 2,0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24조 제1항)	-11,658	-12,074	-12,507	-36,239	-12,080

주: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24)

(1) 추계방법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기준 법인·소득세 감면액(전망)은 총 12억원 수준

○ 최근 감면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소득세 감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표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전망) ¹⁾
계	8	1.6	3	8	12
법인세	8	1.6	3	8	12
소득세	0.1	0	0	0	0

주: 1)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방법)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감면액(전망)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법인세)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1.0억원* + 100% 감면액 2.0억원**

* 1억원 = 12억원 ÷ 12 (5년 × 2 + 2년)

** 2억원 = 1억원 × 2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간 국내 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2025년 국내복귀기업) 9년(2026~2034년) 100% + 5년(2035~2039년) 50% 감면
 (2026년 국내복귀기업) 9년(2027~2035년) 100% + 5년(2036~2040년) 50% 감면
 (2027년 국내복귀기업) 9년(2028~2036년) 100% + 5년(2037~2041년) 50% 감면
 (2028년 국내복귀기업) 9년(2029~2037년) 100% + 5년(2038~2042년) 50% 감면
 (2029년 국내복귀기업) 9년(2030~2038년) 100% + 5년(2039~2043년) 50% 감면

[표 15]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법인·소득세, 2026~2043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25년 국내복귀기업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26년 국내복귀기업	—	2.0	2.0	2.0	2.0	2.0	2.0	2.0	2.0
2027년 국내복귀기업	—	—	2.0	2.0	2.0	2.0	2.0	2.0	2.0
2028년 국내복귀기업	—	—	—	2.0	2.0	2.0	2.0	2.0	2.0
2029년 국내복귀기업	—	—	—	—	2.0	2.0	2.0	2.0	2.0
계	2.0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25년 국내복귀기업	1.0	1.0	1.0	1.0	1.0	—	—	—	—
2026년 국내복귀기업	2.0	1.0	1.0	1.0	1.0	1.0	—	—	—
2027년 국내복귀기업	2.0	2.0	1.0	1.0	1.0	1.0	1.0	—	—
2028년 국내복귀기업	2.0	2.0	2.0	1.0	1.0	1.0	1.0	1.0	—
2029년 국내복귀기업	2.0	2.0	2.0	2.0	1.0	1.0	1.0	1.0	1.0
계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추계결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연장 시 법인·소득세는 2026년부터 2043년까지 18년간 총 115억원(연평균 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최대 14년(9년간 100%, 이후 5년간 50%) 동안 적용되어, 2029년에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43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단위: 억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104조의24)	-2.0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9.0
	'36	'37	'38	'39	'40	'41	'42	'43	누적	연평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104조의24)	-8.0	-7.0	-6.0	-5.0	-4.0	-3.0	-2.0	-1.0	-1150	-6.4

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의2)

(1) 추계방법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2019~2023년(전망)) 연평균 감면액은 1.9억원 수준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전망) ¹⁾	'19~'23(전망) 연평균 감면액
관세	1	0.3	7	0.2	1	1.9

주: 1)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간(2019~2023년(전망))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표 18]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관세	1.9	1.9	1.9	1.9	1.9

(2) 추계결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시 관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5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관세

(단위: 억원)

	'25	'26	'27	'28	'29	누적	연평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118조의2)	-1.9	-1.9	-1.9	-1.9	-1.9	-9.5	-1.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